

「(가칭)설계공모의 기술(매뉴얼)」 서면 자문의견서

11p: 절차도는 디자인적으로는 미적요소는 있으나, 시간의 흐름이나 국토부 서울시지침등의 비교가 헛갈릴수 있음. 절차도를 이해하는것도 시간이 걸림. 절차도는 일반적인 다이어그램의 표방식이 이해도를 높이겠음, 코드 a 가 절차도에도 포함필요

13p: 예산 고려사항

설계지침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금액 등은 별도로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며, 공모지침 작성 및 번역을 위한 인건비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음(대다수의 지자체는 담당과에서 공모지침 작성이 어려움)같은 내용 추가

15p, 19p: 주2) 공공건축관리자 역할 및 심사위원 구성

설계공모 단계에서 PA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근거가 있나요? 통상적으로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A가 위원장으로 당연직이 된다는 오해가 될수도 있습니다(근거지침이 있다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19p: 기술위원=전문위원(?)

대부분의 공모에서 테크니컬한 부분을 검토하는 위원을 기술위원으로 하고 있으나, 동일한 내용을 국토부 지침에서는 전문위원으로 명칭함.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운영지침이랑 다르므로 검토가 필요함.

26p: 참가제한

공모운영영역에 지원했으나, 수입을 못하면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기술위원(전문위원)도 참여가 제한되어야 함.

기타:

설계공모 운영지침 12조의 심사위원 제척 기피 회피 에 대해서도 내용이 추가 필요

국토부 지침에는 있으나, 일반 공모에서 위 내용이 지침에 적용되지 않아. 심사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공모 운영자는 참가자와 심사위원의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위 사항을 지침에 반영해야 심사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음

전반적으로 설계공모의 전체 과정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담당자가 도움이 많이 되겠음. 추가적으로 공모 운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나 대응방안, 주요질문 등이 별도로 정리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함. 주요 정책사업의 경우 당선자 선정이후에 작품집이나, 오프라인 전시 등을 활성화함으로 건축전문가가 아닌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하는 것 필요하겠음

서명 : 한창호 한창호 (인)